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 -

2017. 1.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주요 방문 결과	3
1. 호주 연방 재무부	3
가. 면담 개요	3
나. 주요 면담 내용	4
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18
가. 면담 개요	18
나. 주요 면담 내용	19
3.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현장 점검	25
가. 면담 개요	25
나. 주요 면담 내용	26
III. 참고자료	29
1. 면담자 명함	29
2. 호주 연방 재무부 면담자료	31
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면담자료	43
4. K-move사업 현장점검 관련 면담자료	43

I. 출장 개요

1. 목적

-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인구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한 호주의 대응방안을 직접 청취하여 우리 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활용
 - 장기 재정전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는 호주 재무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장기 재정 전망 기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
-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활용
 - 지방정부 수입 및 지출구조, 중앙정부 재정구조와의 비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제도 등
- 정부가 「K-Move」로 브랜드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호주 현지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연수중인 청년 및 연수후 취업자 등 면담을 통해 훈련과정, 임금수준 등 사업의 성과를 점검
 - 호주는 특수 기술과 기능 분야의 인력수요가 크므로, 현지 준공공기관, 공공훈련기관, 업종별 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도제형·자격 취득형 연수를 통한 취업을 2016년 1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

2. 출장자

- 정문중 조세분석심의관
- 김대철 재정정책분석과장
- 강세욱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 고준혁 기획협력담당관실 기획주무관
- 전대영 총무담당관실 지출주무관

3. 출장 기간

- 2016. 12. 17(토) ~ 12. 23(금) (5박 7일)

4. 방문 기관

- 호주 연방 재무부(Australian Treasury), 캔버라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NSW Treasury), 시드니
-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현지 운영기관 방문 및 연수생 면담
 - K-move센터 방문 및 연수생 면담, 멜버른
 - 현지 운영기관(Oz Career) 방문 및 협의, 시드니

5. 일정

일 자	일 정	세 부 일 정
12. 17(토) ~ 18(일)	인천→멜버른	○ 출국 (인천 17일 18:45 → 멜버른 18일 11:35)
12. 19(월)	멜버른	○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관련 사업 참여자 면담 및 k-move센터 방문
12. 20(화)	캔버라	○ 호주 연방 재무부 (Australian Treasury) 관계자 면담
12. 21(수)	시드니	○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현지 운영기관(Oz Career) 방문 및 협의
12. 22(목)	시드니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 (NSW Treasury) 관계자 면담
12. 23(금)	시드니→인천	○ 귀국 (시드니 09:00 → 인천 17:40)

Ⅱ. 주요 방문 결과

1. 호주 연방 재무부(Australian Treasury)

가. 면담 개요

□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년 12월 20일 연방 재무부 1층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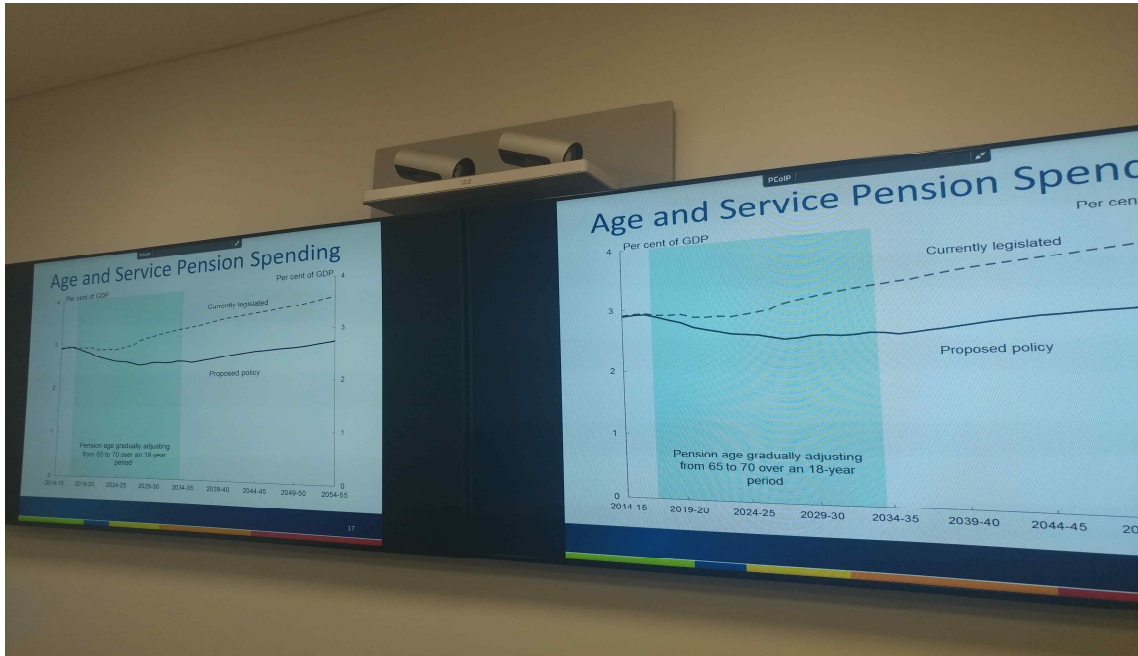
□ 면담자(총 5명)

- Ms Katherine Tuck, Budget Policy Division
- Mr Robert Ewing, Tax Analysis Division
- Ms Leanne Neo, Macroeconomic Modelling Division
- Ms Penny Philbrick, Social Policy Division
- Mr Tristram Sainsbury, International Policy and Engagement Division

[사진 1] 방문단(좌측)과 호주 연방 재무부 면담자(우측)



[사진 2] 호주 연방 재무부의 발표자료



나. 주요 면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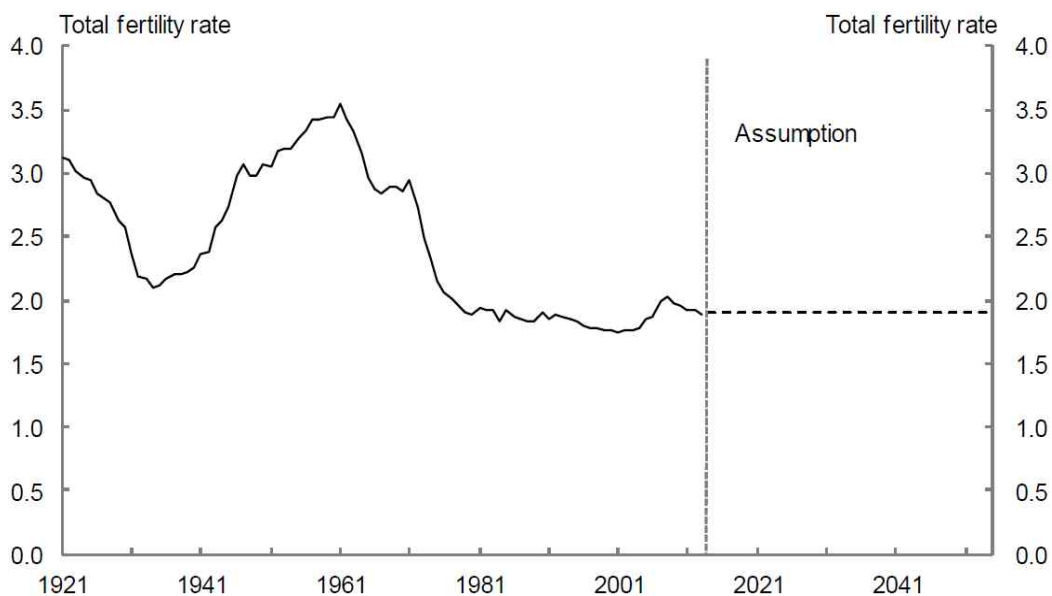
호주의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의 법적 근거와 발간 시기 등

- 호주의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는 현 정부 정책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호주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40년 동안 경제 성장, 고용시장, 국가재정에 미치는 변화를 전망
 -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는 2002년을 시초로 2007년, 2010년, 2015년에 발간한 장기보고서로 적어도 5년 마다 한 번씩 발간
 - 호주 연방정부는 「예산법」(Budget Honesty Act)에 근거하여 5년마다 한 번씩 세대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법 제20조 및 제21조)

호주의 장기 인구전망

- 호주의 장래인구 증가율은 1.3%로 과거 40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1.4%)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따라서 호주 인구는 현재 23.9백만명에서 2054~55년 39.7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출산률(fertility rate)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되지 않고 순이민자(net overseas migration)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연장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임
- 호주의 합계출산률(total fertility rate)은 1.9명으로 1970년 후반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가임여성의 연령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경제성장, 유연한 근무여건, 정부의 출산지원(baby bonus and Family Tax Benefit)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출산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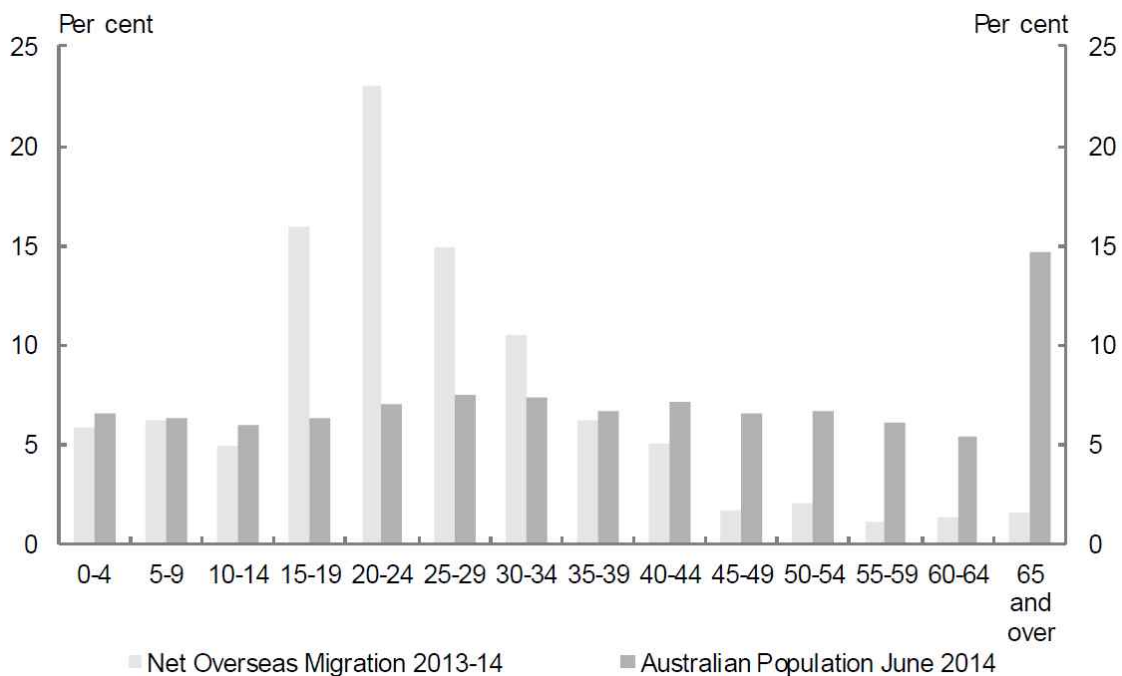
[그림 1] 호주의 합계출산률 추이와 전망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순이민자는 호주의 인구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순이민자는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지원 정책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순이민자는 1995~2005년 105,000명에서 2005~2015년 220,000명으로 증가
 - 따라서 2015년 세대간 보고서에서는 순이민자를 매년 215,000명으로 가정
 - 또한 순이민자는 호주 거주민에 비해 젊어서 총인구의 평균연령을 낮추고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춤으로써 연령분포에 영향을 줌
 - 2013~2014년 이민자의 약 88%가 40세 미만인 반면, 호주 거주민의 약 54%가 40세 미만임
 - 이민자의 약 54%가 15~29세인 반면, 동일 연령대가 호주 거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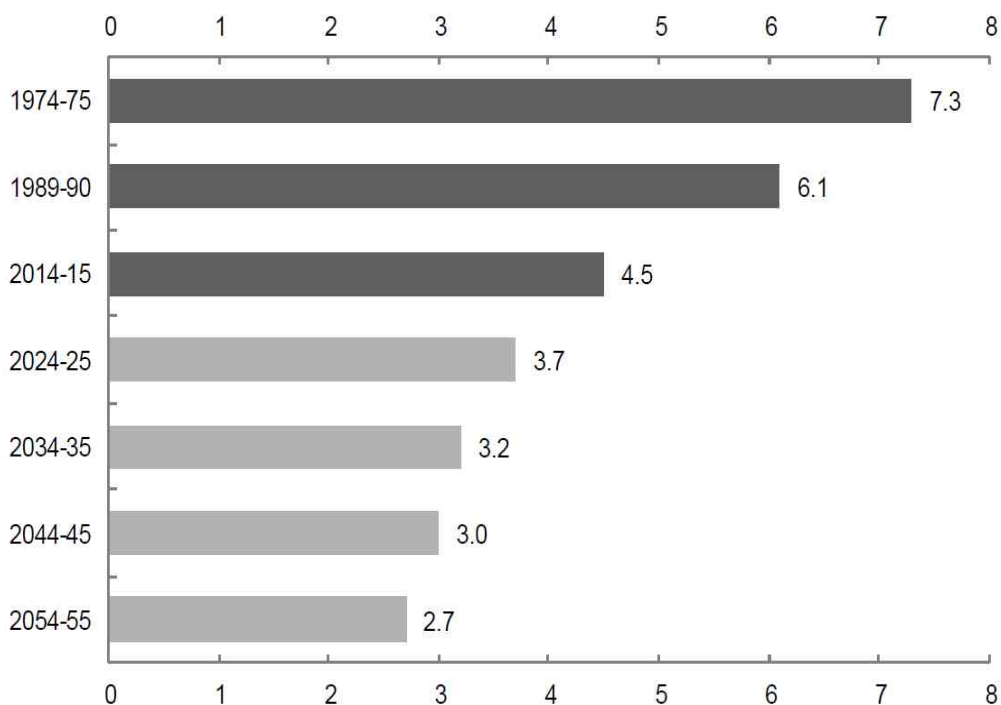
[그림 2] 호주 순이민자와 거주민의 연령 분포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4~1975년 1.2백만명에서 2054~2055년 8.9백만명으로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4~1975년 8.7%에서 2054~2055년 22.6%로 급속하게 증가
 -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의 경우 남성은 2015년 91.5세에서 2055년 95.1세로, 여성은 2015년 93.6세에서 2055년 96.6세로 연장
 -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당 15~64세 인구 수는 1975년 7.3명에서 2015년 4.5명을 거쳐 2055년 2.7명으로 감소
 - 이런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조세기반의 약화를 가져옴

[그림 3]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당 15~64세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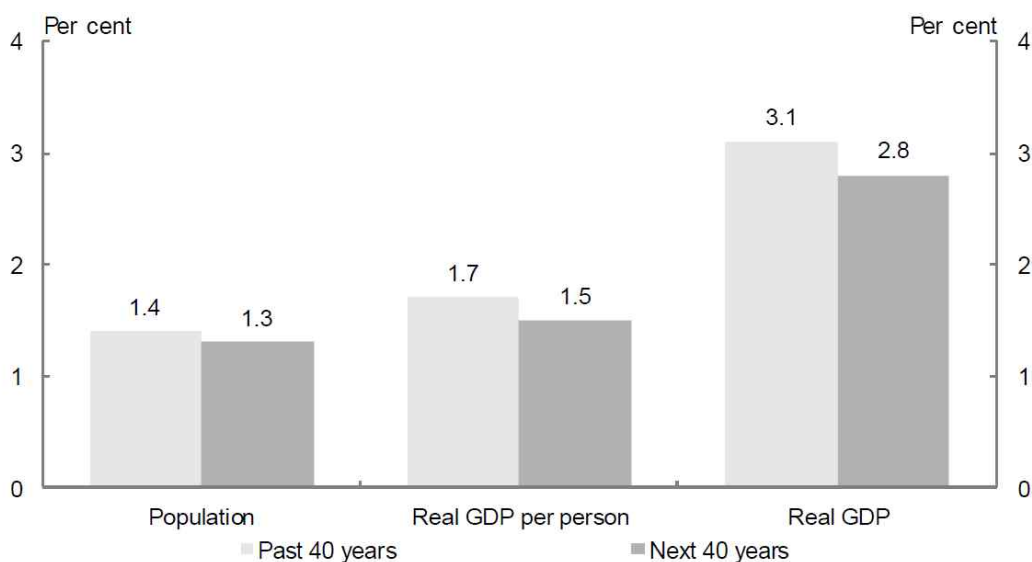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호주의 장기 경제전망

- 향후 40년 동안 호주 경제는 지난 40년 동안의 실질GDP성장률(3.1%)보다 약간 낮은 2.8%의 실질GDP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 향후 40년 동안 1인당 실질GDP성장률도 1.5%로 과거 40년 동안의 1인당 실질GDP성장률(1.7%)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1인당 실질GDP성장률(1.5%)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하면, 15세 이상 인구(0.1%p), 경제활동참가율(-0.1%p), 노동생산성(1.5%p)으로 구성

[그림 4] 호주의 과거 40년과 향후 40년의
인구증가율, 1인당 실질GDP 성장률, 실질GDP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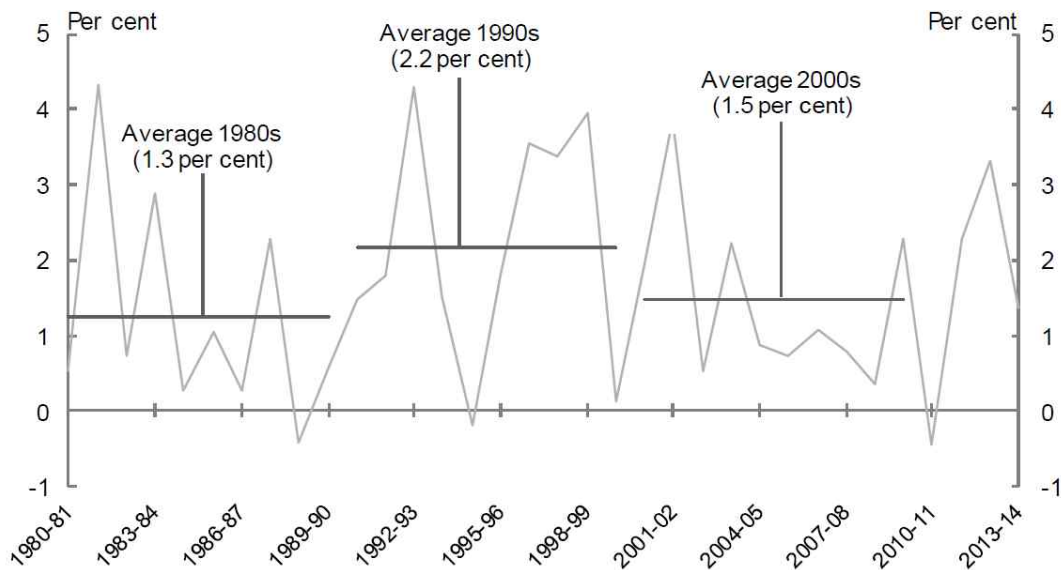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장기적으로 호주 경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면서 과거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54~2055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2014~2015년 기준 64.6%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호주 경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해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1990년대 호주의 생산성은 1980년대와 1990년의 경제개혁에 의해 매년 2.2%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2000년대 들어 1.5%로 하락
 - 이런 개혁내용은 산업보호규제 철폐, 개방경제, 노동 및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제거, 조세개혁 등을 포함
 - 향후 40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와 동일하게 매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5] 호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호주의 장기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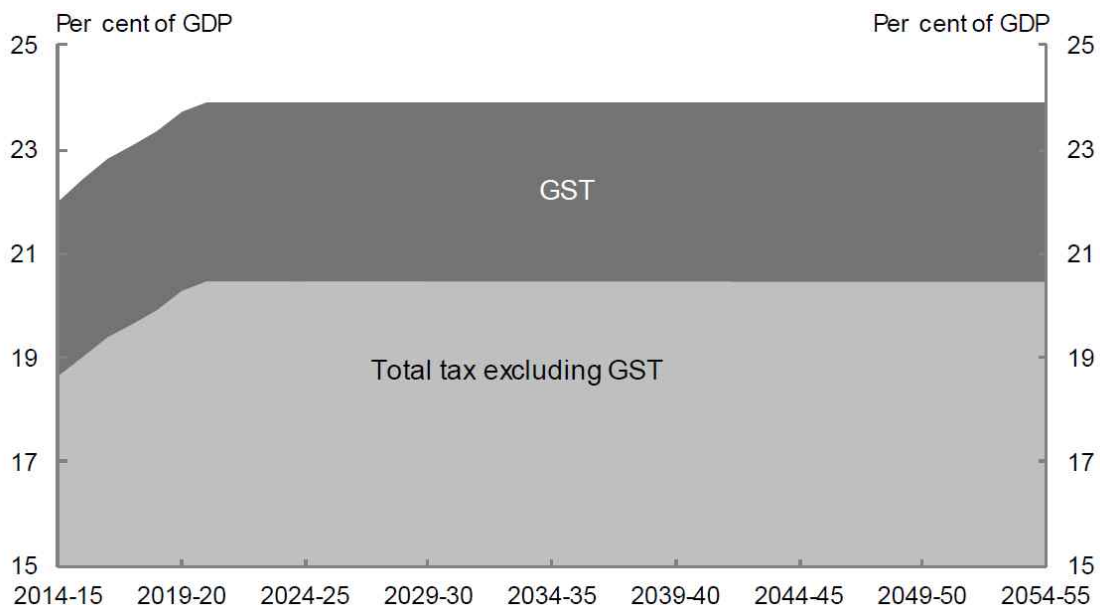
- 2015년 세대간 보고서(2015 Intergenerational Report)에 따르면, 호주의 장기 재정전망은 크게 과거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의 전망,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전망,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의 전망으로 구성

- 과거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Previous policy)의 전망은 2014~2015년 예산 이전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에 따른 재정 전망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Currently legislated)의 전망은 현재 호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근거한 재정 전망
-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Proposed policy)의 전망은 현재의 정부가 제안한 정책들을 모두 반영한 재정 전망

□ GDP 대비 국세수입은 향후 40년 동안 23.9%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3.9%는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도입된 2000~2001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2008년 동안의 평균 수준임
 - 23.9%는 2020~202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과세구간 상향조정(bracket creeping)에 따라 개인소득세수가 증가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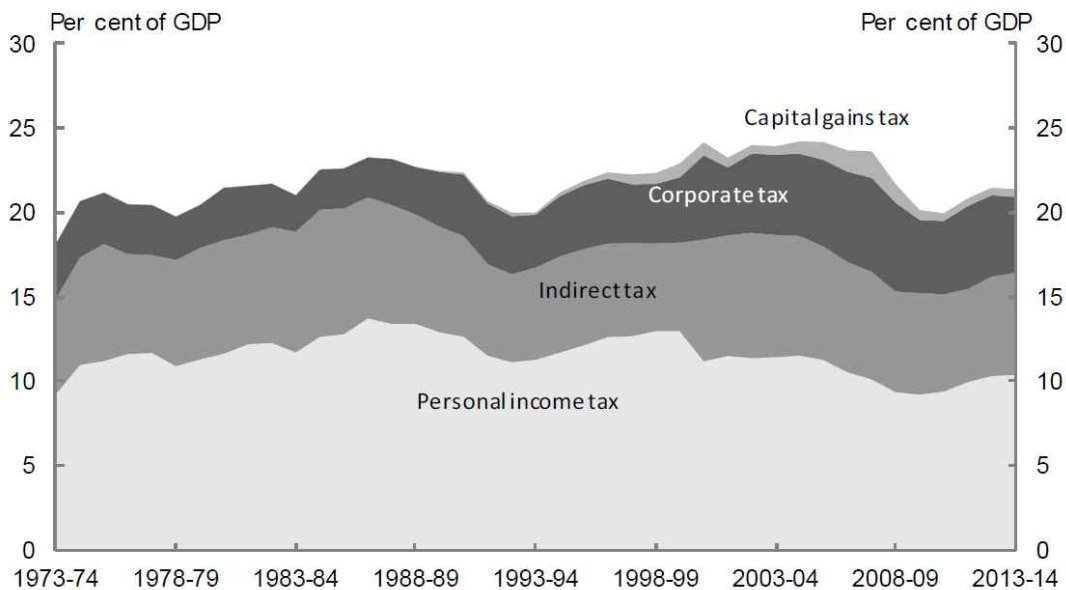
[그림 6] 호주의 GDP 대비 국세수입 전망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은 개인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GST)의 영향으로 간접세가 다음으로 법인세와 자본소득세가 뒤를 잇고 있음
- 향후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상업의 디지털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조세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조세수입의 구성비율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

[그림 7] 호주의 GDP 대비 조세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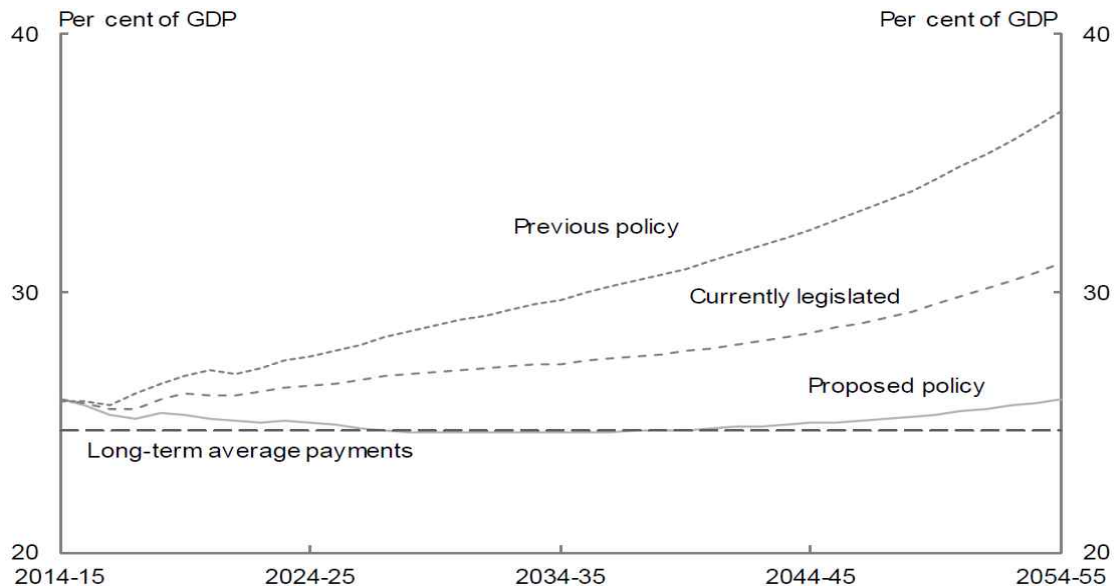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지출은 상기의 3가지 경우(Previous policy, Currently legislated, Proposed policy)에 따라 전망
 - 과거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Previous policy) 지출은 2054~2055년 GDP 대비 37.0%(1,687십억 호주달러)에 도달하고 연평균 3.6% 증가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Currently legislated) 지출은 연평균 3.1% 증가하여 2054~2055년 GDP 대비 31.2%(1,422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Proposed policy) 지출은 2054~2055년 GDP 대비 25.9%(1,197십억 호주달러, 현재의 지출수준)에 도달하고 연평균 2.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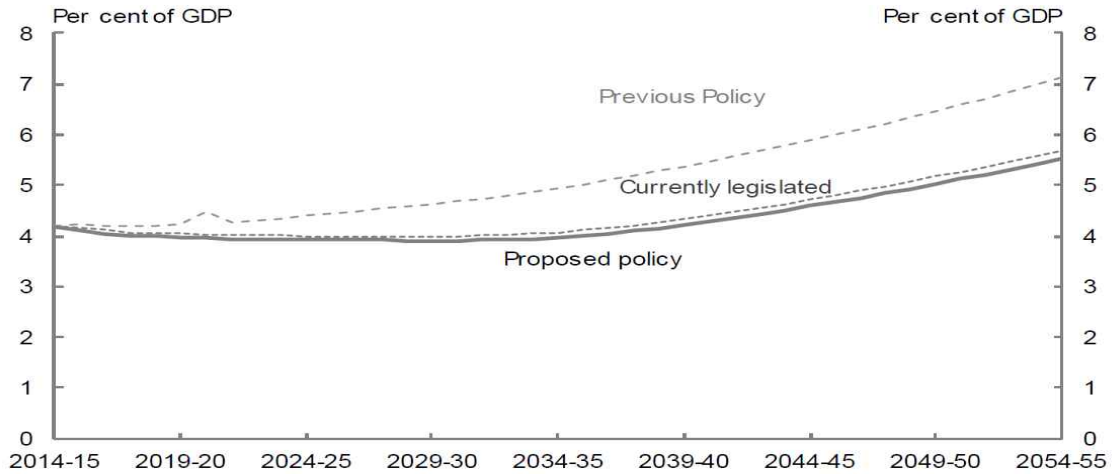
[그림 8] 호주의 GDP 대비 지출 전망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건강지출(Health spending)은 중앙정부(41%), 지방정부(27%), 개인(32%)이 나누어 부담
 - 과거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Previous policy) 건강 지출은 2054~2055년 GDP 대비 7.1%(324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Currently legislated) 건강지출은 2014~2015년 GDP 대비 4.2%에서 2054~2055년 GDP 대비 5.7%(260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Proposed policy) 건강지출은 2054~2055년 GDP 대비 5.5%(255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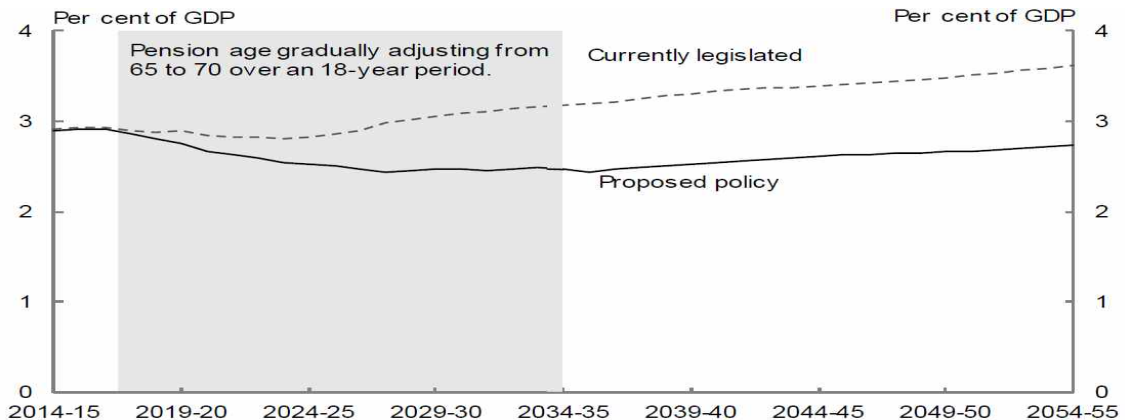
[그림 9] 호주의 GDP 대비 건강지출 전망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기초연금(Age Pension)은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최저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불되며 호주 노인의 약 70%가 수급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Currently legislated) 기초연금은 2014~2015년 GDP 대비 2.9%에서 2054~2055년 GDP 대비 3.6%(165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연동방식 변경 등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Proposed policy) 기초연금은 2014~2015년 GDP 대비 2.9%에서 2054~2055년 GDP 대비 2.7%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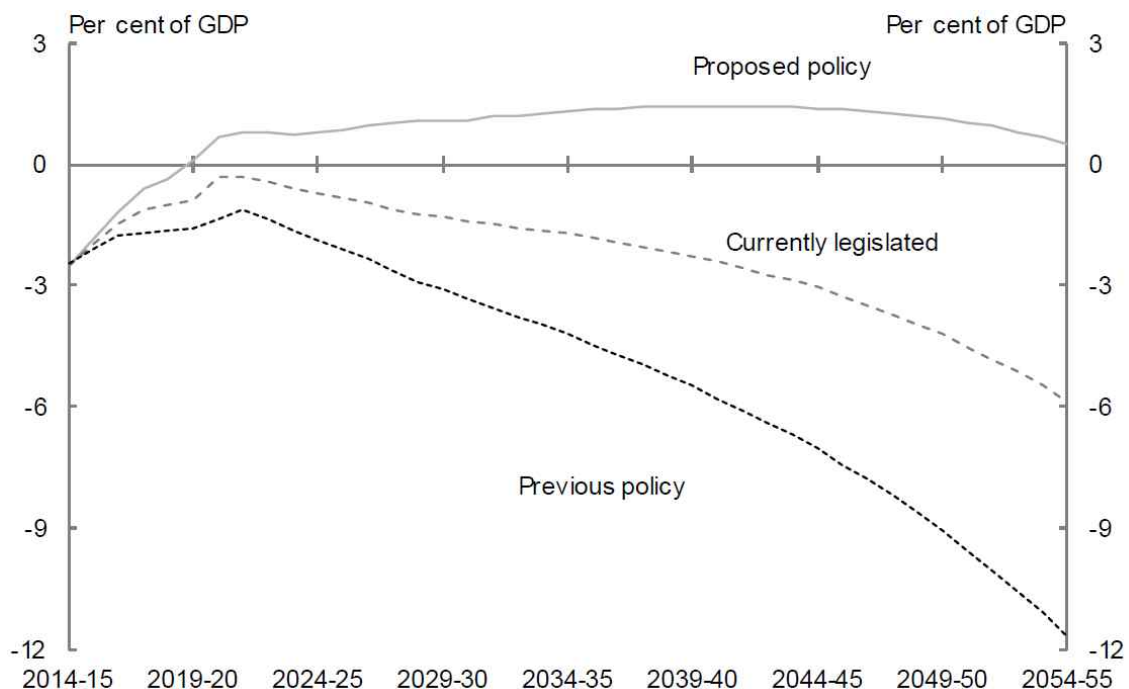
[그림 10] 호주의 GDP 대비 기초연금지출 전망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재정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상기의 3가지 경우(Previous policy, Currently legislated, Proposed policy)에 따른 지출전망에 따라 차이가 발생
- 2014~2015년 현재 재정적자가 GDP 대비 2.5%(245십억 호주달러)
 - 즉, 현재 호주는 수입보다 지출이 하루에 100백만 호주달러가 발생하여 단기적인 수지적자가 발생
 - 과거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Previous policy) 재정적자는 2054~2055년 GDP 대비 11.7%(532.8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Currently legislated) 재정적자는 2054~2055년 GDP 대비 6%(266.7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Proposed policy) 재정수지는 2014~2015년 GDP 대비 2.5% 적자에서 2019~2020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54~2055년 GDP 대비 0.5%(24.3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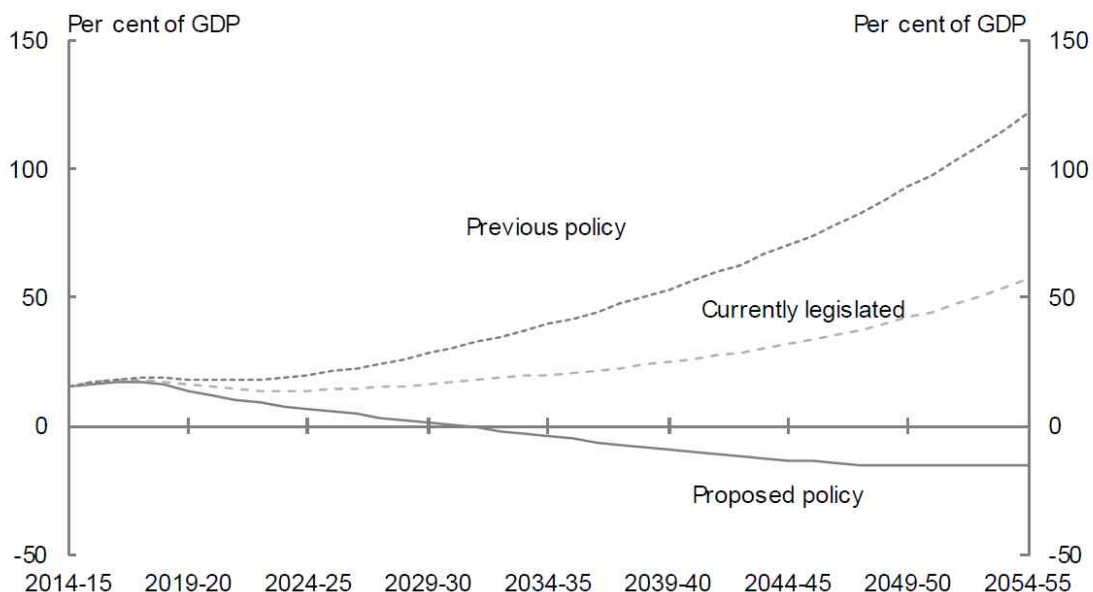
[그림 11] 호주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순채무(Net debt)는 상기의 3가지 경우(Previous policy, Currently legislated, Proposed policy)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에 따라 차이가 발생
- 과거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Previous policy) 순채무는 2054~2055년 GDP 대비 122%(5,559십억 호주달러)에 도달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Currently legislated) 순채무는 2054~2055년 GDP 대비 60%(2,609십억 호주달러)로 감소
 -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Proposed policy) 순채무는 2031~2032년에 없어지는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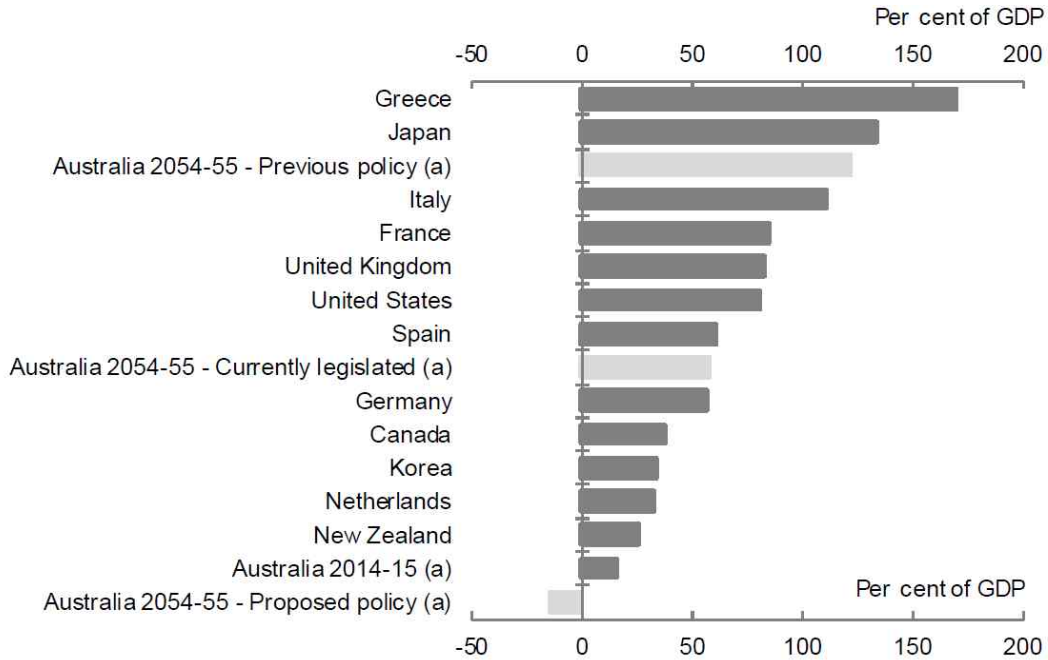
[그림 12] 호주의 GDP 대비 순채무 전망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 3가지 경우에 따른 순채무 규모를 국제비교하면, 과거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Previous policy) 향후 40년 이후 호주의 순채무는 다른 외국의 현재 순채무 규모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제도가 개정되는 경우(Proposed policy) 호주의 순채무 규모는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림 13] GDP 대비 순채무 국제비교



자료: 호주 연방 재무부

향후 호주의 대책

-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서 고령층, 청년층과 장애인의 근로장려, 장기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계획

- 장기 재정전망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출절감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재정수지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순부채도 2055년에 GDP 대비 60%에 도달
 - 이런 결과는 미래의 위험요인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
 -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지속된 예산규율(budget discipline)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New South Wales Treasury)

가. 면담 개요

□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년 12월 22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회의실

□ 면담자(총 4명)

- Mr Kevin Cosgriff, Agency Budget & Policy
- Ms Jane Cheung, Economic Forecasting & Modelling Branch
- Ms Maryanne Debbo, International Investment & Markets
- Ms Allen Treanor, International Investment & Markets

[사진 3] 방문단(우측)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면담자(좌측)



[사진 4] 방문단(좌측)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면담자(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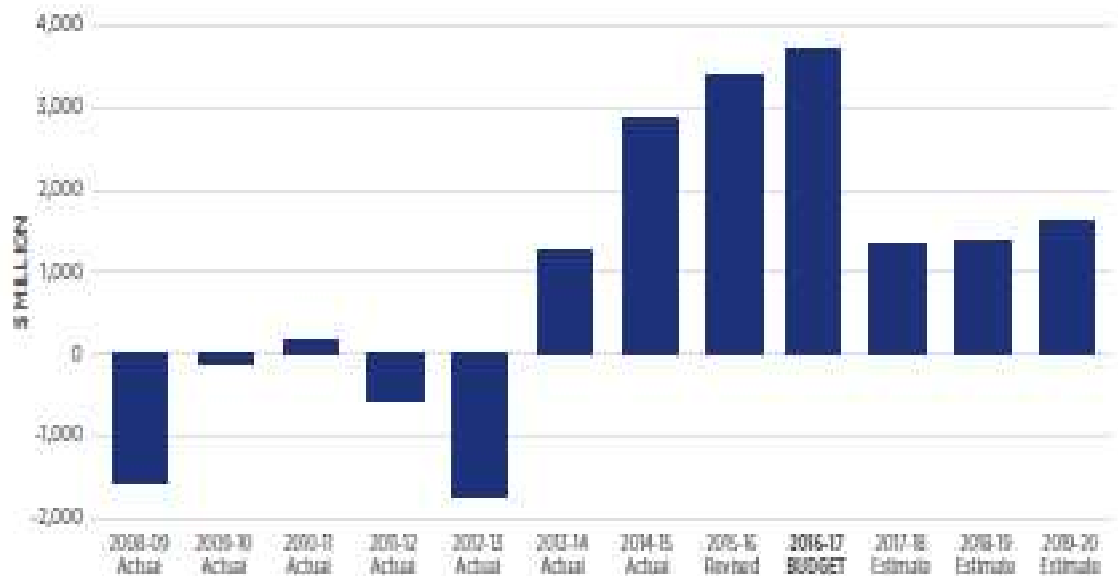
나. 주요 면담 내용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재정상황

- 2016~2017년 예산(2016-17 Budget)에 따르면, 수입(Revenue)이 지출(Expenses)보다 높아서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2016~2017년 수입은 77.0십억 호주달러이고 지출은 73.3십억 호주달러로 재정수지 흑자가 3.7십억 호주달러로 주내총생산(GSP: Gross State Product) 대비 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부채에서 자산을 제외한 순채무(Net Debt)는 7.5십억 호주달러로 GSP 대비 1.3%
- 그러나 중기적으로 재정흑자폭은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 2016~2017년 예산-2019~2020년 계획까지 수입(Revenue)의 연평균 증가율(2.3%)이 동 기간 지출(Expenses)의 연평균 증가율(3.0%)보다 낮아서 재정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순채무는 증가 전망

- 2016~2017년 예산-2019~2020년 계획까지 재정수지 흑자는 연평균 2.0십억 호주달러(GSP 대비 0.3%)로 감소하고 순채무는 연평균 17.1십억 호주달러(GSP 대비 2.8%)로 증가

[그림 1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재정수지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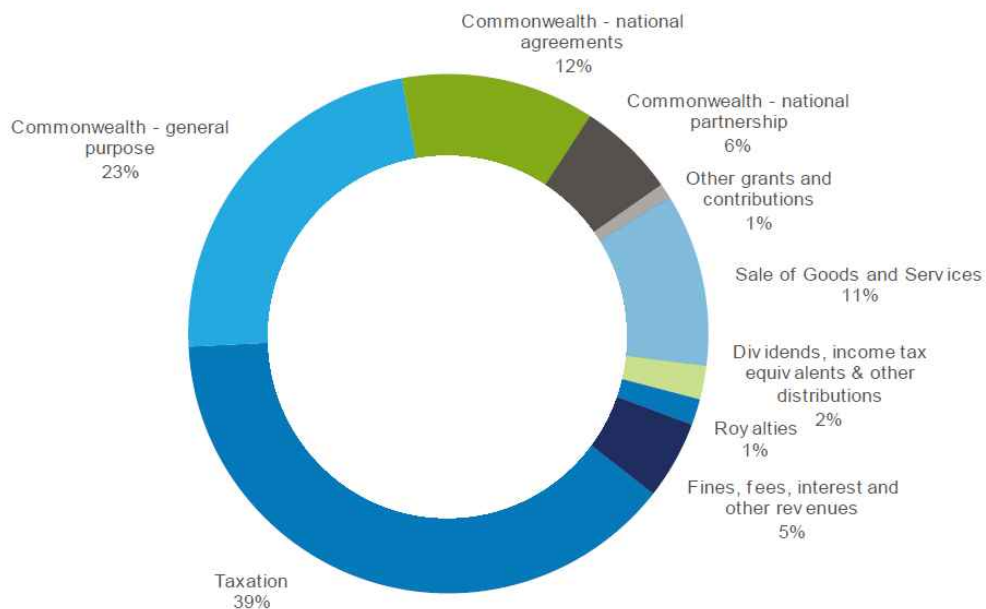
자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수입구조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제도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수입은 크게 지방세(Taxation),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Grant revenue),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
 - 2016~2017년 수입 중에서 지방세는 39%,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이 41%, 기타수입이 20%를 차지함
 - 지방세는 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transfer duty)와 급여세(payroll tax), 재산세(land tax) 등
 -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은 각 주의 경제·재정상황에 따라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GST)에서 받는 포괄보조금(general purpose), 국가의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보조금(national agreements),

- 주의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보조금(national partnership)
- 기타수입은 재화용역에 대한 판매수입(sale of goods and services), 이자수입(interest income), 배당금(dividends), 로열티(royalties), 벌금(fines), 수수료(regulatory fees) 등

[그림 1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2016~2017년 세입구조



자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 2016~2017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수입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호전됨에 따라 전년 보다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포괄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
 - 2016~2017년 수입은 77.0십억 호주달러로 전년(73.8십억 호주달러)에 비해 4.4% 증가하였으나 2016~2017년 예산-2019~2020년 계획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증가폭이 둔화
 - 지방세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인해 연평균 2.4% 증가

- 또한 주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포괄보조금이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제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6~2017년 예산-2019~2020년 계획까지 0.9% 증가에 그침

※ 호주의 포괄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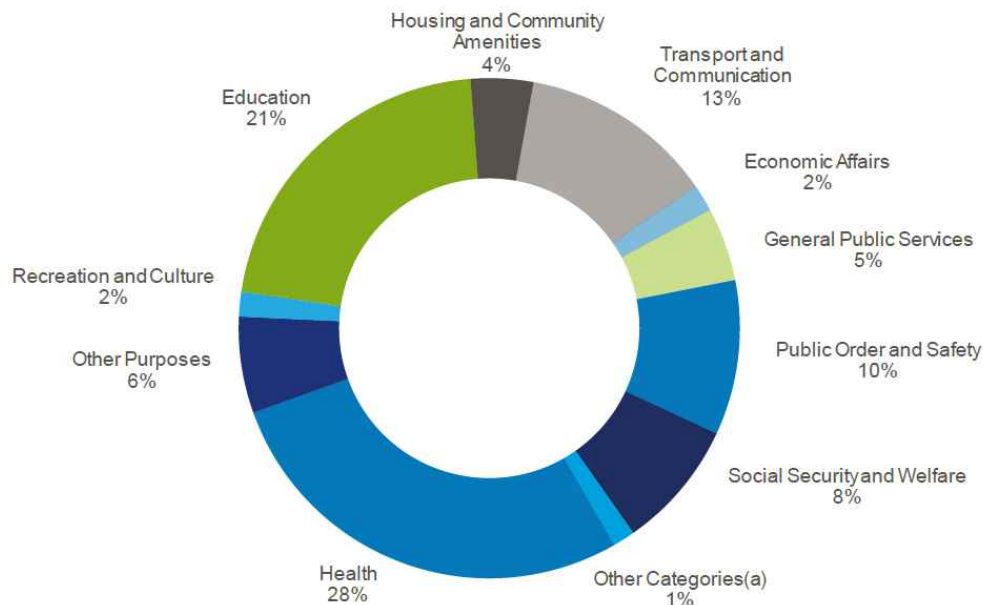
- 호주의 각 주(state)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위원회(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에서 계산된 공식에 근거한 재정형평성 원칙(principle of Horizontal Fiscal Equalisation)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 공식은 각 주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경제·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주에 대해 적게 지원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 등으로 지방세수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징수됨에 따라 포괄보조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
 - 포괄보조금의 원천은 2000년에 도입된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출구조와 재정개혁 사례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출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보건(health)이 2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21.5%), 운송및통신(12.6%), 공공질서및안전(10.0%), 사회보장(8.3%) 순
 - 2016~2017년 보건분야 지출은 20.4십억 호주달러로 전체 지출의 27.9%를 차지함
 - 2016~2017년 교육분야 지출은 15.7십억 호주달러로 전체 지출의 21.5%를 차지함

- 초중등교육(primary and secondary schools)지출이 11.1십억 호주달러로 교육분야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16~2017년 운송및통신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지출은 각각 9.2십억 호주달러, 7.3십억 호주달러로 전체 지출의 12.6%, 10.0%를 차지
- 2016~2017년 사회보장분야, 주택및지역사회분야 지출은 각각 6.1십억 호주달러, 2.9십억 호주달러

[그림 1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2016~2017년 분야별 지출



자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출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지출 증가와 SOC 투자 등으로 인해 증가할 전망
 - 2016~2017년 지출은 73.3십억 호주달러로 전년(70.4십억 호주달러)에 비해 4.2% 증가하였고 2016~2017년 예산-2019~2020년 계획까지 연평균 3.0% 증가
 - 2016년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세대간 보고서(NSW Intergenerational Report 2016)에 따르면, 지출은 향후 40년 동안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뉴사우스웨일즈주정부는 자산재활용프로그램(asset recycling program) 등과 같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건설 가능
 - 2015~2016년 예산 이후로 주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장기 임대함으로써 6.6십억 호주달러를 절감
 - 또한 주정부는 서비스전달체계(service delivery system)를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

3.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현장 점검

가. 면담 개요

□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년 12월 19일 멜버른 KOTRA 무역관
- 2016년 12월 22일 오즈 커리어(K-move사업 현지 컨소시엄 업체) 회의실

□ 면담자(총 5명)

- 이정훈 멜버른 코트라 무역관 관장
- 황성운 멜버른 코트라 무역관 과장
- 박상환 K-MOVE 사업 참여자(호주의 대표적 유제품제조사인 데본 데일(Devondale) 취업)
- OZ CAREER 매니저 서형전
- I WORLD 대표 김종욱

[사진 1] 방문단 4명(좌측)과 면담자 3명(우측)



[사진 2] 방문단 4명(좌측)과 면담자 2명(우측)



나. 주요 면담 내용

정부가 2015년 11월 발표한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에 따르면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대표적으로 호주는 IT 등 특수 기술·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도제형·자격취득형 모델을 확산하기로 하였는 바, 그 추진 현황 및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은?

□ 추진 배경

- 청년들의 호주 진출 초기 취업비자(457비자)발급 요건 충족이 어렵고 워킹홀리데이비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02 직업연수비자(현장실습, 직업연수)를 통한 도제식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호주진출 확대 도모

<457비자 개요>

- ① 영어 IELTS 5.0 이상, ② 부족직군 해당 3년이상 경력, ③ 최소연봉 A\$53,900이상 채용 및 비자 스폰서십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나 실무경력이 부족하고 영어가 부족한 대학졸업 청년들은 발급받기가 어려운 조건임

<402비자 개요>

- ① 기술강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최근 2년내 1년 이상 경력 및 학업 수행자 (영어점수 제출 필요없음)
- ② 호주 정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당 최소 30시간 진행 필요
- ③ 전체 프로그램의 70%는 근무현장에서 실습으로 진행

<워킹홀리데이비자 개요>

- ① 한 고용주 밑에서 최장 6개월까지 근로가능
- ② 88일 이상 1차 산업 종사시 1년 체류 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 추진 경과 및 한계

- 호주 지역개발공사와 협업하여 402비자로 2명 호주 진출한 사례가 있으나,
- 외국인에게 도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여건이 되는 현지기업 발굴이 쉽지 않고,
- 현지기업에서 연수비자 발급을 부담스러워하며, 이에 따라 관리 및 교육기관에서 비자 발급 대행시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한계 노출
 - 비자발급 및 관리비용에 1년 A\$6,000로 이민성 대행 수수료 포함 2년간 총 A\$15,000 소요(한화 약 13,500천원)

□ 대안 및 향후 계획

- (자격취득형 확대) 도제기업 확보 및 비자 스폰서쉽이 어려움에 따라 호주 자격형 프로그램을 연수과정으로 구성하여 호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연수 프로그램 확대
 - 호주 기술자격 취득시 Level 3단계는 1년 경력 대체 인정, Level 4단계는 3년 경력 대체 인정되어 취업비자 신청시 유리
 - 연수생들이 호주식으로 교육받고 자격취득 후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채용시 현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 고용주 선호

< 자격취득형 현황 >

- 호주 조리, 유아교육교사, 타일공, 그래픽디자인 등 현지 부족직군 대상 호주 CertificateⅢ 이상 자격취득 연계 연수과정 개설 확대
 - * ('15년) 21과정 285명 → ('16.12월) 27과정 406명

- (취업비자 연계 강화) 자격취득형 연수과정 통해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비자(457비자) 전환 연수생들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취업자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업비자 발급요건 해결위한 연수과정 구성에 초점

- '16년 11월말 호주 TAFE(공립기술학교)과 연계하여 조리분야 CertificateIV 취득형 연수과정 개설(14명)하여 운영중이며, 취업 비자 전환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
- (자격취득 통한 경력개발 사례 발굴) 호주 자격취득 프로그램이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 및 호주취업과 국내 재취업시 도움이 된 사례를 적극 발굴
- 유아교육과정 수료 및 취업 후 귀국하여 국내 영어유치원 재취업, 호주 자격취득 및 취업경력 토대로 캐나다로 이동하여 재취업한 사례
- (407비자로 도제형 계속 추진) 도제기회 제공 가능한 호주 부족직군 해당 기업을 지역정부 및 산업협회와 연계하여 발굴할 예정이며, 최근 비자제도 개편시('16.11.19) 402비자가 407비자(Training Visa)로 재편되어 외국 정부기관에서 비자 스폰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K-Move스쿨 연수프로그램 참가 연수생을 비자 스폰서하여 진행 가능한지 검토중

※ 참고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15.11) 중 호주 지원 전략

- (준공공기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의 준공공기관 (예: RDA*)과 「KOREA Trainee Project」 추진 ('16년)

 - * RDA(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는 호주 연방정부 부수상 겸 지역개발부 장관 산하의 지역개발 촉진 기관
 - 직업연수비자(402 비자)를 활용한 도제형 프로그램 운영(MOU 체결)
 - * 402 비자: 조리·용접·배관 등 인력부족 651개 직종에 대해 2년간 현장실습형 직업훈련 운영
 - 현지 준공공기관은 호주의 구인기업 발굴, 연수생의 연수 및 근로조건 등을 스폰서하고, 연수 종료 후 호주 내 취업 지원
 - 산업인력공단은 특성화고, 폴리텍대학 또는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연수 및 취업 알선 연계

□ (교육훈련기관) 호주 TAFE와 현지 부족직종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연계형 연수과정 운영 후 현지 취업 연결 ('16.上)

 - 우선 조리직종을 대상으로 Certificate 3 과정(30명) 및 Diploma 과정(30

명) 운영 ('15.12월 호주 시드니 TAFE와 MOU 체결)

* Certificate III 과정: 8개월(국내 4개월 + 국외 4개월)

Diploma 과정: 10개월(국내 4개월 + 국외 6개월)

○ 수료생은 TAFE 협약 기업 등 현지기업으로 취업 알선

□ (업종별 협회) 호주 퀸즐랜드 자동차협회(MTA)와 MOU를 체결, 현지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언어 및 직무교육 후 취업 연결 ('16년)

○ 현지 취업처 확보 및 직무교육은 MTA에서 직접 실시하고, 어학교육은 현지 어학 전문 연수기관 등 활용

* MTA는 3백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등록기관으로 직업교육 및 호주 자격(AQF) 발행 가능

○ 자동차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15.12월)

멜버른 무역관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은?

(1) 사업 개요 및 현황

□ 연혁

○ '12년 K-MOVE 사업지원 시작

○ '13년 K-MOVE 취업거점 무역관으로 지정, 해외취업지원 업무 수행

□ 현황

○ 담당직원 : 2015년 K-Move 센터 전담직원 신규 채용

— 황성운 과장(본사파견, '15.3월 부임), 권영일(현지 전담직원, '15.8월 채용)

○ 예산: 연간 1.09억 (인건비 5,600만원, 사업추진비 5,300만원)

○ '16년 실적달성 (12월 18일 현재)

- 구인처발굴 : 86/85(포지션)
- 취업지원 : 12/12(명)

(2) 사업 추진 현황

□ 호주 현지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2013년~2016년)

- '13년 Kotra와 함께하는 희망취업 박람회
 - 세미나, 1:1 취업 인터뷰, 화상 인터뷰
 - 133명 참가 / 2차 면접자 28명 (취업확정 확인 4명)
- '14년 한국청년 희망취업 박람회(멜버른 총영사관과 공동 주최)
 - 세미나, 1:1 취업 인터뷰, 화상 인터뷰
 - 200명 참가 / 2차 면접자 30명 (취업확정 확인 5명)
- '15년 Job Fair 박람회 (대양주 통합 취업박람회)
 - 세미나, 1:1 취업 인터뷰, 화상 인터뷰
 - 211명 참가 / 2차 면접자 20명 (취업확정 확인 3명)
- '16년 호주 취업 박람회
 - 세미나, 1:1 취업 인터뷰, 화상 인터뷰
 - 196명 참가 / 2차 면접자 20명 (취업확정 확인 5명)

□ 취업 전략 간담회 'JOB담회(JOB談會)' 개최

- '16년 5월 JOB담회 개최
 - 연사 3명, 구직자 56명 참가, 취업정보 및 TIP 제공/이력서 점검 /비자상담
- '16년 12월 JOB담회 2 개최
 - 연사 4명, 구직자 50명 참가, 취업 성공자들의 취업성공 스토리 전달 및 네트워킹

□ 한국 글로벌 취업 상담회(매년 상·하반기 개최) 구인처 참가 유치

- '14년, '15년 10개 업체 참가 - 총 7명 취업
- '16년 상·하반기 8개 업체 참가 - 총 1명 취업확정 (3명 조율중)

□ 무역관 글로벌 취업 상시지원

-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kotramel>)를 통한 구직자대상 취업 관련 정보제공
- 다양한 포지션 발굴, 구직자대상 정보 및 면접기회 제공
- 맞춤형 인재 Pool을 운영, 신속한 매칭 서비스 제공
- '16년 취업확정 12명 / 포지션 발굴 86건
-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과 협업
- 지속적인 취업시장 조사 및 동향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강화

- 주정부, 이민청, 총영사관 및 OKTA 네트워크 활용, 한-호 교류기업 발굴 확대
- 현지 이민 변호사, 법무사, 유학원 및 한인학생회와의 협력, 비자 자문 및 현지 구직자 확보
- 한인잡지 광고 게재 및 온라인 카페, SNS 운영으로 지속적인 구직 자들과의 소통
- 멜버른 이외의 지역 (애들레이드, 퍼스, 골드코스트, 브리즈번)의 한인회 및 리크루트먼트 업체와 협력관계 유지 및 확대

□ 기타

- 한국 회사 채용 예정자에 대한 이력 & 학력 점검
- 호주회사 채용사실 확인(산업인력공단 취업장려금)
- 호주 취업동향 및 비자관련 조사

(3) 애로 및 건의사항

□ 인재 Pool 확보의 어려움

- 포지션 발굴 후 인원확보 어려움
 - 광고 채널의 한계
 -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방문자를 가지고 있는 멜버른 무역관의 채널로는 인원확보가 어려움
 - 점진적으로 트래픽 수가 확대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력 Pool 확보가 쉽지 않고 제 때 인력을 수급하기 힘들
- 한국 산인공과의 연계 부족
 - 월드잡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 구직자들을 모집하는데 다른 구직 사이트에 비해 월드잡의 인지도가 많이 낮음

□ 양질의 포지션 확보의 어려움

- 호주 리크루트먼트사 및 호주 구직 사이트들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좀더 다양한 양질의 포지션 확보 용이(비용발생)
 - 현재로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및 네트워킹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 발생

□ 비자발급의 특수성

- 많은 회사들이 적격의 인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구직자들의 비자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 고용이 가능하나 (457 스폰서 비자), 비자를 지원해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발생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비자문제에 있어서 호주정부와 한국정부간의 고용비자 및 단기비자 조건 등의 협상으로 비자발급 기준이 완화된다면 고용 창출이 더 늘어날 것임

□ 농장 및 공장 취업지원

-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농장 혹은 공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일반 사설 소개업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소개를 받고 있으나, 질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임
- 농장 및 공장에 대한 취업지원도 코트라에서 해 줄 수 있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인프라 확대 가능

사업 참여자 또는 운영기관 입장에서 k-move사업 개선 사항 및 주요 시사점

(1) 전반적인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사업 참여자 등과의 심층 면담 결과, 스스로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보제공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여, 국내와 전혀 다른

호주 고용시장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막연히 소위 ‘스펙 쌓기’ 식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제공망인 ‘월드잡’의 경우 여전히 인지도 미흡

-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목적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해외 취업자의 절반이 다시 귀국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정부 지원을 통해 취업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최대 거주 1년)만료 후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단순히 해외취업자 수를 늘리는 물량 중심 접근에 지나치게 경도되기 보다는 취업비자 발급 요건 완화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스펙향상과 해외취업문화체험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참여자를 선별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해외경험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제고하거나 경력개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의 취업인정 기준 관련

-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2015년까지 연간급여 2,400만원 이상의 취업처에 취업을 알선한 경우에만 1인당 2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운영기관에 지급하였음.

- 그러나, 호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급 A\$ 17.70으로 한국(6,030원)의 약 2.4배라는 점, 이에 따라 호주 해외취업자의 2015년 평균 연간 급여가 3,03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인센티브 체계는 사실상 민간 업체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할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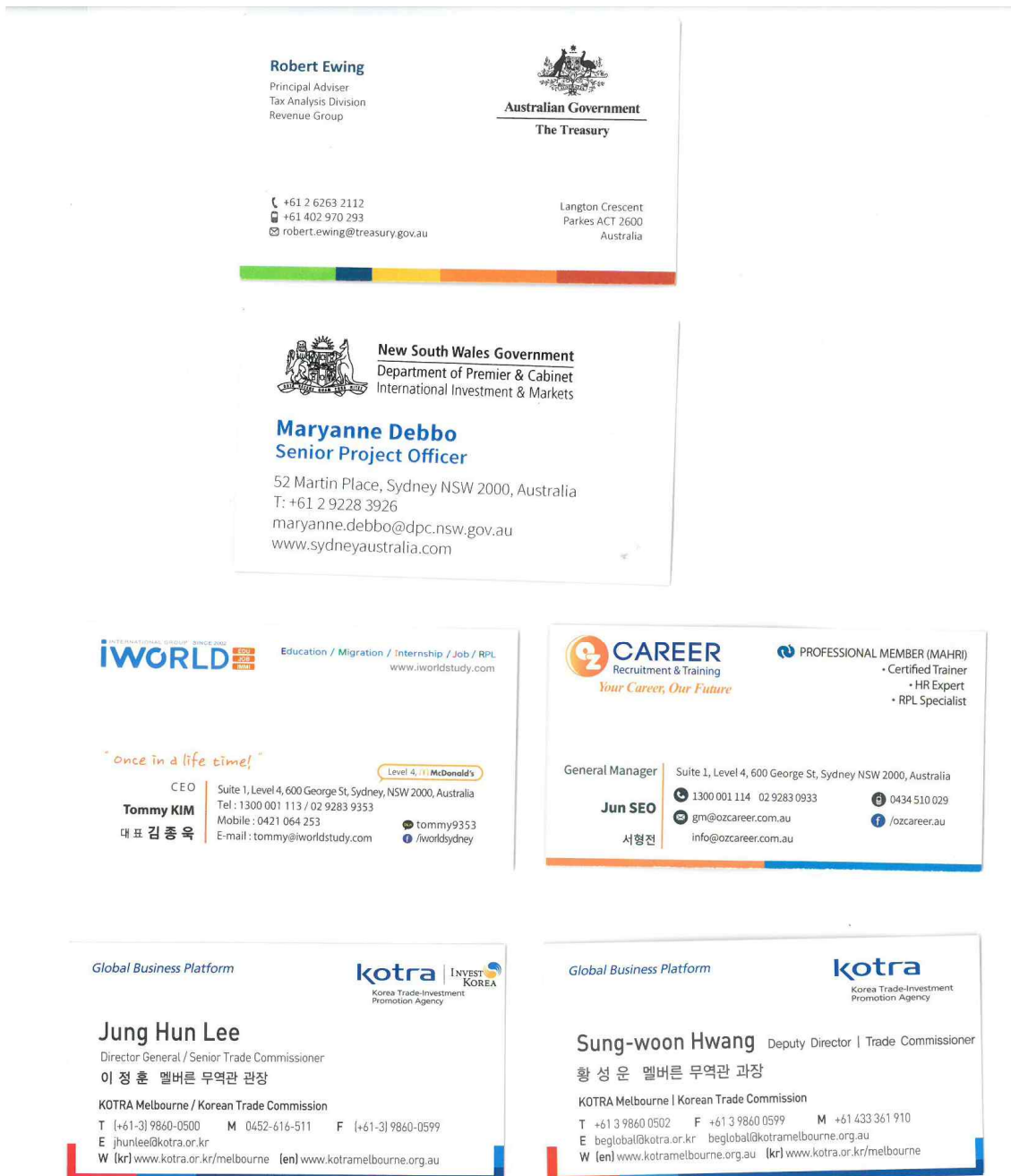
- 각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기본생계비, 생활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수준을 정하기보다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최저 급여 수준을 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의 연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예산 배분 조정 관련

- 현재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연수지원 즉, K-move스쿨에 투입되고 있고, 특히, 동 내역사업의 1인당 지원액은 500만원(단기과정)~800만원(장기과정)에 이르는 등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해외취업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호주의 경우 최근 해외취업을 위한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원 단가를 낮추더라도 가급적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일단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적절한 현지 컨설팅을 통해 비자연장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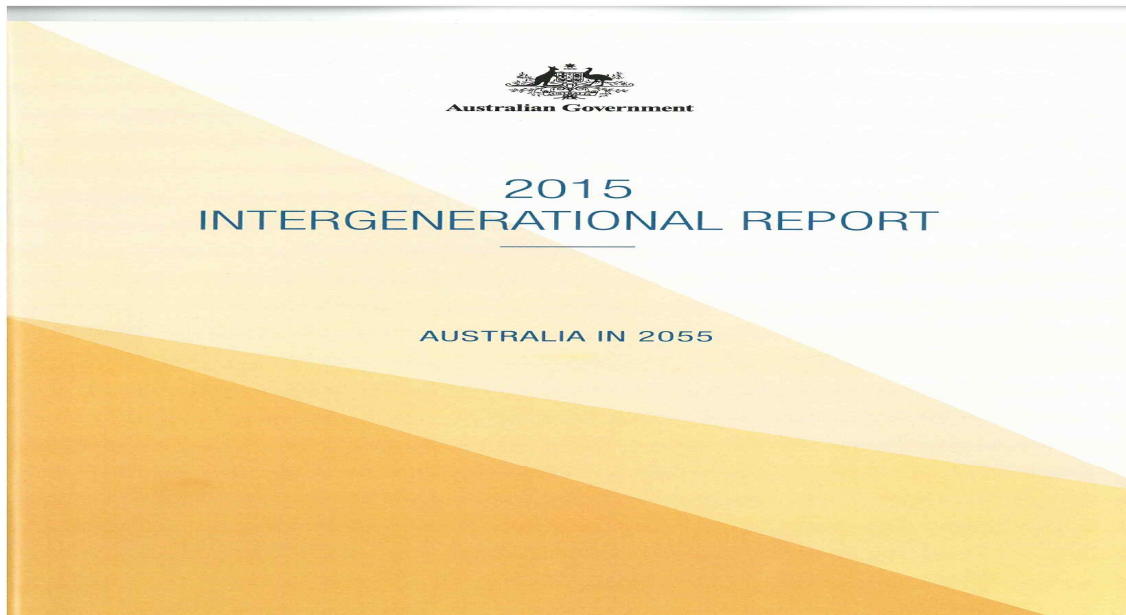
Ⅲ. 참고자료

1. 면담자 명함



2. 호주 연방 재무부 면담자료

가. 2015년 세대간 보고서 요약



나. 2015년 세대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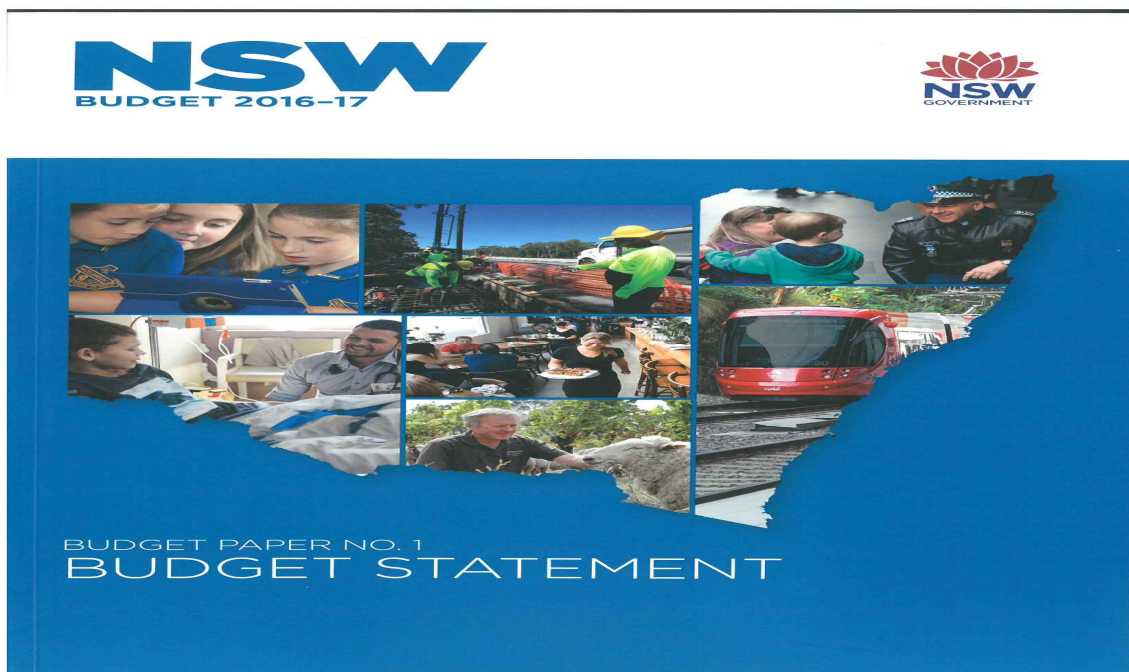


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부 면담자료

가. 2016~2017년 예산서 요약



나. 2016~2017년 예산서



4. K-move사업 현장점검 면담자료

ABOUT OZ CAREER

- OZ CAREER Recruitment & Training 은 호주 한인 최초 Training & Recruitment Agency
- 연간 약 200명의 구직자 들에게 자격증 교육 및 취득 업무, 취업을 위한 트레이닝 서비스 제공
- 호주 교민 기업 및 현지 기업들에게 양질 인력 제공
- AHRI (Australian Human Resources Institute ID: 00225543)
호주 인적 자원 협회 정식 등록 업체 (HR Manager : Jun SEO)
- 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호주 및 해외 경력으로
호주 인증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서비스 제공

II 호주 취업 시장

2. 호주 취업 시장 환경

- 경제성장 동력 위해 숙련된 노동력 필요, 취업, 기술 이민정책으로 해당 인력 유입 노력

- 약 106,750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457비자로 체류
- 457비자로 부족인력 충원 산업은 IT, 요식업, 숙박업, 마켓팅, 헬스케어, 교육, 건설 등
- ✓ 특히, 기술전문 직종 전공 및 경력자 진출 유망

- 매년 업데이트 되는 **호주 직업군**에 주목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s

402(직업연수), 457(단기취업),
186(ENS) Direct Entry, RSMS 주정부지명
비자 신청 가능한 651개 직종

Skilled Occupations List

189(독립기술), 190(주정부후원),
489(인구저밀도주정부후원임시)비자 신청
가능한 190개 직종

KEY

나의 전공, 영어와 경력이 상기 직업군에 해당하면 호주 해외 취업은 가능 !

III 호주 취업 비자

1. 비자유형

비자유형	비자유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취업비자 (457)	CSOL & SOL에 해당 기술소유자	해당직업군에 해당, 최소 3년 이상 경력 또는, 호주 학위 및 IELTS 5.0 이상	최대 4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 (417)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 세컨 비자(88일)	만 18-30세 (2017년부터 35세로 상향 예정)	1년 (최대 2년)
직업연수비자 (402)	트레이닝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비자 (주당 30시간 이상 현장연수)	만 18-50세 고용주와 의사소통 가능	1년 (최대 2년)
ENS비자 (186)	대도시지역 고용주 후원 받아 취업	50세 미만, 3년 이상 경력으로 기술심사 통과 및 IELTS 각 6.0 이상	영구
RSMS비자 (187)	기술인력이 부족한 인구 저밀도 지역 고용주 후원 취업	50세 미만, 직업군에 따라 경력 상이 (또는, 호주 학위), IELTS 각 6.0 이상	영구

III 호주 취업 비자

2. 단기취업비자(457비자)

◆ 457비자 - Temporary Work(Skilled) Visa

영어점수	▪ IELTS 평균 5.0 이상, 각 영역 4.5 이상
고용계약	▪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스폰서 허가 받아야 함
급여조건	▪ 최소연봉 A\$53,900 이상
부족직군	▪ 직종이 CSOL & SOL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경력	▪ 3년 이상 경력(호주 학위가 있으면 면제)
체류기간	▪ 최대 4년까지 취업가능
영주비자 전환	▪ 2년 근무 후 근로계약 갱신하면 영주비자 ENS(186비자) 또는 RSMS(187비자)로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

V 호주 취업 비자의 현재

1. Working Holiday 비자 현황

● 한국 워킹 홀리데이비자 발급자는 전체 발급자의 10.6%이지만 감소 추세



V 호주 취업 비자의 현재

2. 457 취업 비자 현황

까다로워진 취업비자 발급조건(457비자 : Temporary Work(Skilled) Visa)

- 01
- 3년 경력, IELTS 5.0, 고용주 스폰서 및 노미네이션, 연봉 A\$53,900이상
 - 스폰서 직업군이 이에 해당 되며, Skilled Occupation List (SOL) 및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 (CSOL)에 있어야 함

영주권으로 연계되는 취업비자 제도

- 02
- 457비자 : 최대 4년 임시비자
 - 457비자 2년 근무 후, 영주 취업비자 신청 가능 (ENS, RSMS)
 - 괜찮은 일자리는 영주비자 이상 요구

공인 영어실력은 필수

- 03
- 영어권 국가 취업에 있어 영어 구사능력은 당연한 것
 - IELTS 점수는 제도상 필요한 영어 점수 (5.0-6.0 요구)
 -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필요 (고용주의 추가 조건)

VI 호주 취업과 이민 전략

1. 영어

- 457비자 최소 영어조건 IELTS 5.0(섹션별 4.5 이상) 이지만 학업, 기술이민, 특수 직종 및 고용주의 요구시 IELTS 5.5 - 8.0까지 필요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위한 공인 영어능력 증명

2. 취업 가능한 직종 경력 및 고용주 스폰서

- 전공과 부합하는 직업군 직종에 대한 분석 필요
- 고용주를 한국 교민 중에서 찾거나 인구저밀도 지역의 잡 서치도 하나의 방법
- 호주교육기관(TAFE 및 COLLEGE 등 RTO) 공부 통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 정규 학.석사 과정에 비해 비용 저렴, 입학조건 영어기준 낮음
- 경력을 통한 RPL통한 호주 학위&자격(AQF) 취득도 새로운 대안

3. 나에게 적합한 취업비자 준비

- 402, 457비자 통한 ENS, RSMS 영주비자 취득
- 정규유학을 통한 기술이민(독립기술, 주정부후원 등) 영주비자 취득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후, 세컨비자 또는, 비즈니스 컬리지 등 학생비자를 활용한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한 취업비자 또는, 졸업, 기술이민 등 고려



IX About RPL

WHAT IS RPL?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이란, 경력자를 위한 호주 자격 인증 제도입니다.” 현재 관련 분야의 학위가 없는 경력자들이 경력인증을 통해서 호주에서의 학위와 동등한 자격증을 발급해주거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과목을 지정해주고 그 부족한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 혹은 학위(Certificate 3, 4 or Diploma)를 발급받는 제도이자, 호주 외 관련 학위 졸업자가 경력은 없지만 한국대학과 호주 RTO와 OZ Career 협의 하에 Syllabus 등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 호주 입국 전, 또는 호주 입국 후에 부족한 과목(실습)이 있을 경우 호주 내에서의 Gap Training 을 통해서 호주 학위(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RPL의 장점



전문성 개발



스폰서쉽
요건 충족



국가 인증 학위



더 좋은
조건직장



정규 수업 없이
시간 절약



국가 자격증
요건 충족



승진의 기회



비용 절감

RPL 성공사례-1 (경력을 통한 취득)



한국에서 양식 요리 경력 3년과 호주에서 경력 1년을 가진 시드니 거주자 James 님은, 본래 시드니에 있는 요리 학교 등록을 고려 하였으나 RPL을 알게 되어 해당 평가기관에서 요청한 부족한 과목 1개를 Oz Career 전문 평가팀의 도움으로 이수 후에 RSMS 영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Certificate IV in Commercial Cookery를 취득



호주에서 약 2년의 타일 경력과 약 2년의 건축 분야 경력이 있는 브리즈번 거주자 Charlie 님은, RPL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Certificate III in Wall and Floor Tiling과 Certificate IV in Building and Construction을 동시에 취득하여 ENS로 영주권을 획득

RPL 성공사례-2 (경력을 통한 취득)



한국에서 경력은 없지만, 2년제 전문대학 뷰티과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부족한 과목 3-4개를 Oz Career를 통해서 갭 트레이닝 이수 후, Certificate III in Beauty Services 취득, WH비자와 세컨비자 또는, 학생비자 기간을 통해서 2년 경력을 쌓고 RPL을 통해서 Certificate III in Hairdressing와 Certificate IV in Hairdressing 취득 후, 457비자 신청하신 Rebecca 님



한국에서 경력은 없지만, 2년제 전문대학 조리과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부족한 과목 3-4개를 Oz Career를 통해서 갭 트레이닝 이수 후, Certificate III in Commercial Cookery을 취득, WH비자와 세컨비자 또는, 학생비자 기간을 통해서 2년 경력을 쌓고 RPL을 통해서 Certificate IV in Commercial Cookery를 취득 후, 비자 신청하신 Robert 님

RPL 성공사례-3 (기타)



지난 2015년 코트라 시드니 취업 박람회에서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경력을 쌓은 후, Diploma of Hospitality 학위를 RPL로 취득 및 현지 관광서비스 분야에서의 관련 경력 쌓으면서 IELTS 5.0 Cafe or, Restaurant / Hotel or, Motel Manager로의 457비자 정식 취업비자를 승인 받은 Jane 님



한국에서 동중 학과나 경력 없이, 호주 TAFE이나 사설 College로의 1년 이상의 학생 비자 과정이 아닌, WH비자 or, 동반비자 등으로 단기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서 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자격 취득 후, 국.공립 어린이집 및 데이케어 센터 취업으로 경력을 쌓고, 추후 Diploma로 RPL을 업뎃 한후, RSMS비자로 가영주비자를 취득하신 Cloe 님